HANSHIN THE HUE

한신공영(주)

세종 가온마을 3단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재공지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가온마을 3단지"**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여 당사에서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대 고객님께서 아직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 재공지 안내 드립니다. 고객님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아래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신속히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세입자(임차인)께서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시어 관련 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재신청기간

▷ 등기신청기간 : 2024.08.19(월) ~ 09.20일(금) [32일간]

■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시행사	⇒	계약자 /법무사	⇒	시행사	⇒	계약자 /법무사	⇒	등기소
대지권규약 확정		등기관련서류 접수		등기 서류발급 (3주이상 소요)		등기소에 접수		등기완료 (등기부등본 등재)

1) 당사에서는 법무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 또는 개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법무사 위임 신청시 : 법무사를 선정하신 후,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등기서류를 접수하시면 등기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집행합니다.

▶ 관련서류 접수 장소는 하단에 기재

2) 개별등기 신청 시 (시행사에서 서류를 교부받아 고객님께서 직접 등기 신청 하시는 경우)

1 단계	시행사에 대지권이전등기 계약자 / 법무사 신청 → 한신공영으로 송부
[준비서류] ① 위임장 1부 (첨부서류(위임장) 참고)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사항 기재 - 3개월이내 발급) ③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3개월이내 발급) ④ 신분증 사본(연락처 기재)	

※ 대지권 비율은 첨부된 대지권규약을 필히 참고하시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계	관련서류 발급 후 계약자(셀프등기) 및 법무사로 송부(수령)
[시행사 발급서류] ▷ ①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③ 대지권규약 ※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건은 일괄적으로 각 시행사에 날인 요청하여 취합된 등기서류 분출예정 각 시행사의 결재 일정 및 접수량에 따라 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소 3주 이상 소요	

3 단계	등기소에 직접등기 신청(시행사 발급서류 및 관련서류)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544-0773
① 시행사 발급서류 지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지권규약, 등기필정보) ② 등기소에 필요서류 사전 확인 필요 (취득세 영수증 사본, 채권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시행사), 신분증 사본 등)	

■ 접수 및 서류발급 - 셀프등기 및 법무사 등기 동일

[접수]
▷ 한신공영 마케팅부 등기 접수/발송 ☎02-3393-3320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4층 마케팅부]

[법무사 대리 등기]
▷ 다수건수(10건이상) 진행에 따른 접수는 한신공영 마케팅부서로 직접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 접수 마감 후 일괄 처리 예정

■ 기타사항

1) 등기 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본인의 책임이므로 등기 신청 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시행사(한신공영, 제일건설)의 (법인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기타문의 사항 :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544-0773
한신공영 마케팅부 ☎02-3393-3320